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8.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8월 12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8.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불법촬영 등 범죄에 취약한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도록 예방하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덜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전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불법촬영”과 “안심스크린” 용어 정의 신설.
 - 안 제5조는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 조항 신설.
- 검토 결과
 - 2022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불법촬영피해경험)에 따르면 불법촬영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대부분이며, 대처 행동이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음. 공중화장실은 대처하기 어려운 장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통계 자료 해석이 필요해 보임.
 -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는 불법촬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확보 수단이 될 것이며,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한편, 서울시 자치구는 모든 자치구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를 규정해놓은 자치구는 4개 자치구뿐으로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규정함이 그 목적이기에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5
----------	-----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유승용, 이성수, 양승이
이순우 의원(4인)

1. 제안이유

불법촬영 등 범죄에 취약한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비상벨 및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예방하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용하는 구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안 제5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8. 5. ~ 8. 9.):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이”로, “정한”을 “정하고,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심스크린의 설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3을 따른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p>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p>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 관리자로 한다.

가. (생략)

나. 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범
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
· 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신설>

②·③ (생략)

제18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
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

-----.

가. (현행과 같음)

나. 구청장이 -----

정하고, 해당 -----

-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
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
며, 안심스크린의 설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3을 따
른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8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